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. 17 선고 2022가단5116798 판결 [구상금청구 및 시효중단을 위한  
재판상청구]

---

전 문

원 고 A공제조합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바른

담당변호사 노만경

피 고 1. B 주식회사

특별대리인 C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2. 12. 13.

판 결 선 고 2023. 1. 17.

주 문

1.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,586,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9. 13.부터 2022. 12. 6.까지는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0. 18. 선고 2017가합527822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 2. 근거

가. 피고 D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나. 피고 B 주식회사, C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춘수

별지